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14
----------	------

2022. 3. 17.(목)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김국기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2022년 3월 8일
- 다. 회부일자: 2022년 3월 10일
- 라. 상정일자: 2022년 3월 17일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국기 의원)

### 가. 제안이유

- 한국어는 그 우수성과 과학성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어 올바른 국어 사용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최근 무분별한 외국어·줄임말·비속어 등의 사용으로 국어의 가치가 훼손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충청북도 내 학생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기본 계획 수립(안 제4조)
- 공문서 등의 작성·평가(안 제5조)
- 정책 등의 명칭(안 제6조)
- 국어책임관 지정(안 제7조), 실태조사(안 제8조)
- 국어 바로쓰기 교육(안 제9조), 국어문화 조성(안 제10조)
- 지원(안 제11조)

##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서성범)

### 가. 조례 제정이유

- 빠른 사회변화와 정보통신 기기의 보급 확대로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활용한 사회관계망 소통이 확산되면서 무분별한 줄임말, 신조어, 비속어, 부정확한 외국어 등의 남용으로 한글 체계와 가치가 훼손되고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장애와 단절을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로<sup>12)</sup> 부각되고 있음.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언어사용 실태조사 결과<sup>13)</sup> 습관적으로 줄임말, 신조어 등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65.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바른 국어 사용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공문서나 보고서, 정책 및 추진 사업 자료 등에서 무분별한 외래어 등의 사용이 도민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개선 필요성이 요구<sup>14)</sup>되고 있음.
- 이에 「국어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충청북도 내 학교 학생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충청북도 교육청 차원의 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와 제4조는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도내 학생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교육감의 책무로 하고 이를 위한

12) 교육현장 학생들 언어 실태 ...‘잼민이’, ‘문젠’등 비속어, 욕설 난무(대전일보. 2021. 10. 7.)

13) 스마트 학생복,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설문조사 진행(제민일보. 2021. 10. 21)

14) ▪ 국립국어원이 2014년부터 5년동안 중앙행정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의 한글 사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564건 중 10,310건(50.1%)의 보도자료가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2014~2018년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개선 권고 현황

연도	총점검한보도자료건수	문제있는보도자료건수	전체지적표현건수
2014	4,000	1,550	4,132
2015	4,203	2,621	8,171
2016	4,232	2,668	9,271
2017	3,994	1,684	6,207
2018	4,135	1,787	5,908
합계	20,564	10,310	33,68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전교조 충북지부, 충북교육청 공공언어 쉽고 바른 우리말 촉구...‘외래어 남발’(뉴스1. 2021. 10. 8.)
- 경기도 공문서 등 공공언어 46% ‘순화’ 필요(프레시안. 2021. 10. 6.)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어 바로 쓰기 정책의 체계적인 시행과 실효성을 강화하여 입법 취지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타당한 내용이라 판단됨.

- 안 제5조는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일반 도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쓰고,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공공성 향상과 올바른 국어 보급 및 국어순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취지를 갖고 있다 생각함.
- 다만 평가는 지표를 가지고 등급·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점검과 구별되는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문서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과 같은 평가방식 및 평가주체,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의 국어책임관의 지정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근거하여 교육감이 국어 바로쓰기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타당한 사항이나, 국어책임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와 국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는 「국어기본법」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타당하나, 국어 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파악과 그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어 바로쓰기 연수 및 교육과 다양한 행사를 통한 국어문화 조성 노력을 규정한 안 제9조와 제10조는 올바른 국어 사용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생활 속 실천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조항으로써 적극적인 시행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제정 취지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인정되고, 제정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며,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충청북도 내 학생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언어 생활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국어순화”란 외국어, 한자어, 비속어 등을 고유어와 표준어로 다듬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어문규범”, “공문서 등”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도내 학생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어 교육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국어 바로쓰기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3. 공문서와 보고서 작성, 정책과 사업 명칭 부여 등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개선 사항
4. 올바른 국어 사용과 관련된 교육과 연수에 관한 사항
5.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평가)** ①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 등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제외한다.

② 교육감은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4조의 기본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등의 명칭)** 교육감은 정책, 사업,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때에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 및 제8조에 관한 사항
2.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도내 학생들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올바른 국어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등)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바로쓰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국어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국어 바로쓰기 주간’ 또는 ‘우리말 바로알기 날’을 지정·운영하는 등 올바른 국어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 관련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국어기본법

[시행 2022. 1. 18.] [법률 제18761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15.>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현수막·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
11.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4. 14.]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1. 6. 15.>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1. 6. 1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5.>

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15.>

[전문개정 2011. 4. 14.]

[제목개정 2021. 6. 15.]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07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법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4.>

1. 해당 공공기관등의 홍보나 국어 담당 부서의 장
2. 제1호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또는 직원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14.>

1. 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공공기관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 4. 삭제 <2021. 12. 14.>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4.>

제11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법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문서등을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14.>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21. 12. 14.]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2. 18., 2021. 1. 5.>

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3. “문서과”란 행정기관 내의 공문서를 분류·배부·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과(課)·담당관 등을 말한다.
4.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5. “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제10조에 따라 결재, 위임전결 또는 대결(代決)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이미지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자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행정전자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9. “전자이미지관인”이란 관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10.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제22조 제1항에 따른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1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4.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2. 3. 1.] [법률 제18461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 유아교육법

[시행 2021. 9. 9.] [법률 제18193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올바른 국어 사용에 관한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학교에서도 국어 교과 속에 올바른 국어 사용에 관한 내용과 한글날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있음.